

화순군민의회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. 3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6.

다. 상 정 일 자 : 2001. 6. 28

(제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문화관광과장 구 복 규

나. 개정사유

- 군민의상 수상후보자의 추천과 군민의상 심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군민의 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.

다. 주요내용

- 군민의 상 수상대상자로 추천되었으나 수상자로 결정되지 못한자는 그 후 1년간 제한·단서 신설 (안 제4조)
- 심사위원회 구성은 화순군의회 의원 5인을 포함하여 수상부문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자중 18인 범위내로 함 (안 제5조 제2항)
- 군민의 상 부상은 금 37.5g(10돈)의 메달로 하고 그 규격과 모형을 규정함 (안 제7조 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82년에 동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17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으나 '94년 이후에는 '97년도에 지역사회 발전분야 1명만을 시상하고 그동안 수상자를 선정치 못하고 있는바,
-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과 심사에 보다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련 부분을 개정하고 부상도 상향 조치하여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코자 개정한 조례안임.

- '94년 이후 7년동안에 1명밖에 수상자를 발굴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내실있게 검토하여 본 조례의 취지를 심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과 함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「시행규칙」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되며,
-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○ 질의요지

- 심사위원 18명중 군의원을 제외한 13명을 군수가 위촉토록 하여 많은 재량권이 부여된 것 아닌가?

○ 답변요지

- 수상 부문별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 위촉하며 심사이후에는 자동 해체됨.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수정가결”

-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

첨 부 :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2항중 “화순군의회 의원 5인을 포함하여”를 “화순군의회 의원 5인과 노인, 여성, 청년, 농민, 언론계 등 각 1인을 포함하여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5조(군민의상 심사)①(생략) ②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화순군의회 의 원 5인을 포함하여 수상부문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자중 18인 범위내에서 군 수가 위족한다.</p>	<p>제5조(군민의상 심사)①(현행과 같음) ②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화순군의회 의 원 5인과 노인, 여성, 청년, 농민, 언론 계등 각 1인을 포함하여 수상부문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중 18인 범위내 에서 군수가 위족한다.</p>